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6. 1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5. 24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4. 5. 28.

다. 상정일자: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4. 6. 1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재산세과장 김흥순】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(30→45만원) 상향 되었으므로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」도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(30→45만원)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일반우편 송달기준을 45만원으로 변경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5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- '23.12.29.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('24.1.1.시행)으로 납부지연가산세¹⁾(舊 증가산금,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마다 부과)가 면제되는 기준금액(납세고지서별·세목별)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음.
- 이는 물가·소득수준을 고려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소액체납액 기준을 상향한 것인바, 이와 동일하게 현 조례상 납세고지서 등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제1항 중2) 일반우편 송달대상을 고지서 1매당 세액 '30만원 미만'을 '45만원 미만'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바, 개정 시에는 일반우편이 24,210건 증가하고 약 4천 7백만 원의 우편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,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며, 등기우편 송달(납세고지서 등) 건수의 감소에 따른 우편비용 예산의 절감 효과와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.

1) 납부지연가산세: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%,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달부터 매월 0.66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(최고 39.6%)

2) 제5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·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,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·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※ 개정 시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비용 절감예상액 : 4천 7백만 원

(단위 건, 원)

우편종류	30만원 이상 등기우편 발송		45만원 이상 등기우편 발송시		예산절감 예상액 (B-A)
	건수	금액(A)	건수	금액(B)	
일반우편	177,377	77,125,070	201,527	86,656,610	9,531,540
등기우편	60,270	148,122,020	36,120	91,383,600	△56,738,420
합계	237,647	225,247,090	237,647	178,040,210	△47,206,880

- 다만, 일반우편 발송 대상 확대로 송달 여부에 대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, 고지서 송달의 입증 곤란에 따른 부과취소·재고지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전자고지 제도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■ 지방세기본법('24.1.1.시행)

제30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·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
제55조(납부지연가산세)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 12. 29., 2023. 12. 29.>

제56조(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)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·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 12. 29.>

[전문개정 2020. 12. 29.]

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'20.12.29.일부개정, '24.1.1.시행)

제34조(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)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. <개정 2017. 12. 29., 2018. 12. 31., 2022. 6. 7., 2023. 12. 29.>

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”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. <신설 2023. 12. 29.>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<개정 2015.7.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7.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